

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6년 2월 13일 조례 제234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산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디지털성범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
 -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
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
 -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
- “디지털성범죄 피해자”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 · 정신적 ·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- “2차 피해”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, 의료기관, 수사·법률기관,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

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
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3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경찰, 공공기관,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
2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
3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·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
4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
5.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
6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신고체계의 마련)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
제10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